

5. 건설기계관리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069호 1999. 12. 28

개 정 이 유

건설기계를 등록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60세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와 시·도지사가 필요시 실시하는 건설기계조종사 교육은 제도의 실효성에 비하여 건설기계조종사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가. 종전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기 전에 판매 또는 전시 등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없이 임시번호표를 부착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
- 나.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등록번호표 부착·봉인자의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함(법 제8조의2).
- 다. 종전에는 제작된 건설기계가 형식승인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형식승인에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

하는 확인검사의 과정에서 불합격조치 등을 통하여 그 시정이 가능하므로 형식승인의 취소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9조 삭제).

라.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실상 그 사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실상 그 사업을 계속하는 등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사업장폐쇄와 사업재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2조 및 제23조 삭제).

※ 시행일 :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2000. 6. 29)

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의 제목중 “등록번호표 봉인자”를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작·부착·봉인”을 “제작”으로, “등록번호표 봉인자”를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등록번호표 봉인자”를 각각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하

고, 동조제4항중 “등록번호표 봉인자”를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제작·부착·봉인”을 “제작”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등록번호표 봉인자”를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제작·부착·봉인”을 각각 “제작”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중 “제작자등은”을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중 “변경신고의무”를 “변경신고 등의 의무”로 하고, 동조중 “건설기계사업자”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9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제작·부착·봉인”을 “제작”으로 한다.

제36조제1호중 “등록번호표 봉인자”를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변경(건설기계 소유지의 변경을 제외한다)”을 “변경”으로 하며, 동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정기점검을 행하는 자, 교육훈련의 위탁을 받은 자”를 “정기점검을 행하는 자”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신청하거나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의 업무와 확인검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행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40조제3호중 “제작·부착·봉인”을 “제작”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외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한 자

5.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그 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한 자

제4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외2·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번호표봉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호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봉인자로 지정받은 자

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태회보